

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I

1.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(배우자 포함)에게 난임시술비가 지원됩니다

- 지원금액 : 비급여여성 최대 300만원(재직중 限)
- 대상시술 :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및 인공수정
- 필요서류 :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고)에서 발행된 난임진단서
※ 연간 의료비 한도 1천만원에 포함

2. 유·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이 의무화됩니다

- 대상 :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직원
- 근무시간 : 5시간(3시간 단축) ※ 법적수준(2시간)에 비해 1시간 추가 단축
- 근무유형 : A(08~14시), B(09~15시), C(10~16시), D(11~17시)
※ 임신정보 등록시 시스템에 자동 신청·승인되어 직책자의 승인없이 사용가능하며, 보수 등 기타 근로조건은 정상근무시와 동일

3. 만35세 이상 만50세 미만 배우자의 건강검진 단가가 인상됩니다

- 대상 : ('2021년 기준) `1972.1.1~ `1986.12.31 출생자
- 단가 :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(5만원 ↑) → 직원의 단가와 동일
✓ 기타 연령대별 단가 : 만35세 미만(15만원), 만50세 이상(30만원)

4. 입사 전 본인학자금 무이자 대부 지원이 대학원까지 확대됩니다

- 대상 : 한국장학재단 대학 또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직원
- 대부금액 : 본인명의 학자금 대출금 전액 / 무이자 (가계안정자금 대부에서 지원)
※ 가계안정자금 대부 한도(3천만원)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, 기존 대학교 본인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상환중인 직원도 추가 신청 가능